

송의종합사회복지관 윤리규범

제정 2024. 6. 11. (기안-0393)

송의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지역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의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법인으로 기독교 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국외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복지와 지역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ESG(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 경영)가 강조되고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ESG 경영의 첫 걸음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직원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명문 복지관이 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태미

서문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향하는 자유 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한다. 아울러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조직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직원·협력기관·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에게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복지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지역주민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조직 활동에 있어서 제반 법규와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준수한다.
- 우리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 우리는 직원간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에 반대한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조직의 사명과 목적이 지역주민 행복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의 지역주민에게 끊임없이 가치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지역주민 중심

- ① 우리는 지역주민이 성장과 존립의 원천임을 명심한다.
- ② 우리는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 ③ 우리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다.

1-2. 지역주민과의 약속 이행

- ①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우리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불만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지역주민 만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우리는 성실, 정직, 투명성의 자세로 지역주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1-3. 지역주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 ① 우리는 우수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산가치 증대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우리는 지역주민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
- ③ 우리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역주민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④ 우리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조직활동에 있어서 제반 법규 및 사회윤리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거래상의 관습을 준수하며, 시장 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경쟁기관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시장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공존 및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 협력사와의 상생

- ① 우리는 협력사를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거래절차 확립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우리는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부당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거래업체 선정 시, 반드시 거래 약정과 관련한 서류(계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3] 등)를 작성하고 거래조건 및 절차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업체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
- ④ 우리는 고정 협력사와 거래 단절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⑤ 우리는 협력사에서 제출되는 가격 및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유출하지 않는다.

3-2. 협력사에 대한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금지

- ① 우리는 협력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가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우리는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는 협력사 등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4-1. 국내외 법규 및 사회윤리 준수

- ①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 ② 우리는 국가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4-2. 사회 공헌

- ①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우리는 사회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4-3. 정치관여 금지

- ① 우리는 개개인의 참정권 및 정치 견해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다.
- ② 우리는 정부, 정당, 공무원 및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관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5-1. 직무 기본 윤리

- ① 우리는 복지관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우리는 직원 상호간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며, 발전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③ 우리는 직원 상호간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국적, 출신지,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 ④ 우리는 업무시간에 업무목적 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5-2. 명량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한 사항

- ① 우리는 직원이 복지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행위 금지를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직원간 욕설, 불쾌한 언어와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직원 상호 간 일체의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 복지관 내에서는 다단계 판매와 같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물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업체와의 거래 강요 등 직원 상호 간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요구나 부탁을 하지 않는다.
 - 법적으로 통제된 각종 총기류, 마약, 유독성 및 폭발성 물품을 복지관 내로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 배포, 판매할 수 없다.
- ② 고용·업무·승진·교육 등에 있어 국적, 출신지, 종교, 성별, 장애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기관내 직군·직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5-3.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

- ① 우리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 및 인재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적극 지원한다.
- ② 우리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복지관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복지관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솔선수범하며, 모든 직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④ 우리는 조직을 분열시키는 파벌조성, 유언비어의 유포, 무기명 투서 등 복지관과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삼가며, 복지관과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 ⑤ 우리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국적, 인종,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⑥ 상급자는 법규나 내부 규정에 위반된 지시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상급자가 내린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하급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자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의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지속되는 경우 차상위 상급자, 윤리경영 주관부서장, 기관장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자는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우리는 직원의 업적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⑧ 우리는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하는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종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

한다.

5-4. 복지관의 자산 관리 및 보호 의무

- ① 우리는 복지관 유무형 자산과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② 우리는 업무수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산의 분실, 절도, 도난 및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하며,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한다.
- ③ 우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5-5. 직원 상호간의 선물

- ① 우리는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과도한 선물 및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부서원들이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한 직원 간의 선물은 무방하다. (직원의 생일, 자녀 돌 등 각종 경조사의 경우)
- ② 우리는 상호간에도 부적절한 금품 수수, 금전 차용 및 연대 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6. 개인정보 보호

- ① 우리는 복지관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 ② 우리는 복지관의 기밀사항과 지역주민의 정보를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비밀정보를 지정된 보관처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보존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파기한다.
- ④ 우리는 비밀정보의 취급과 외부에서 문의한 기밀사항과 외부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우리는 직원이 퇴사 시 복지관이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직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반드시 복지관에 반납하고, 어떠한 복사본도 소유하지 않는다.
- ⑥ 우리는 복지관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대외로 제공 또는 공표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공되도록 한다.
- ⑦ 우리는 복지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복지관 이외의 장소에서 강연, 기고, 출판을 하는 경우, 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견해가 복지관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부칙

1. 윤리규범 위반시 신고방법

- 1-1. 직원은 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나 잠재적으로 비윤리적일 수 있는 행위를 본인 이 하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관장 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1-2. 윤리규범 위반 신고채널은 제3자(지역주민, 협력사 등)도 위에서 제시한 신고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 1-3.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제보자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2. 관장 및 부서장의 책임

- 2-1. 관장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2-2. 관장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3-1.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비윤리적 사항 신고서[붙임2] 또는 구두보고)을 통해 관장 혹은 윤리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함께소통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3-2.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즉시 관장에 보고해야 한다.
- 3-3. 관장은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직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 3-4. 관장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3-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3-6. 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불이익 금지

- 4-1. 복지관은 비윤리 행위 제보자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보복, 괴롭힘, 제재도 하지 않으며, 또한 윤리규범의 잠재적 위반을 보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불이익을 금지한다.

5. 포상 및 징계

복지관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실천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직원은 복지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징계한다.

6.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범은 복지관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7. 윤리교육 및 서약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사시 청렴(반부패)·인권 존중 서약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첨부1]

청렴(반부패)·인권 존중 서약서

나는 송의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직장 생활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고 복지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나는 직장 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동료를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킨다.

년 월 일

부서: 직위 : 서약자 : (서명)

송의종합사회복지관 귀하

[첨부2]

비윤리적 사항 신고서

※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실 경우 신고자란 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직위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 가능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익명 시 미기입 승의종합사회복지관 귀하				

[첨부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송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송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송의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승의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승의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성명 : (인)

승의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